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7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민병주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경숙, 이병운, 이봉준,
이상옥, 이성배, 이종태,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3명)

1. 제안이유

-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토록 규정되어 있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의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 이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여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함(안 제6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
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 ----- ----- ----- ----- ----- ----- ----- ----- ----- ----- 노후 · 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략)

② ~ ④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024년 서울시 공공정비계획수립 예산〉

사업명	세목	예산액(천원)
공공정비계획수립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50,000,000원*30개소	7,500,000천원

※ 2024년도 서울시 예산서 참고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